

**재산후견인 임명 신청을 접수하기 전에
아셔야 하는 사항들**

»» **재산후견인이란?**

재산후견인은 상속법원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성인 (보호받는 사람이라고 부름)의 재산(금융 자산 및 소유 재산)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집니다.

»» **후견인이란?**

후견인은 상속법원에 의해 지정되며, 피후견대상자를 관리하는 특정 사항들을 결정하는 권한 및 책임을 가집니다. 이러한 결정 사항들에는 치료 결정 또는 피후견대상자가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진행성 질환으로 인해 피후견대상자의 예상 생존 기간이 단축된 경우, 후견인은 피후견대상자를 의료 치료를 받거나 계속하거나 중단 하거나 거부하는 데 있어서 정보에 근거한 의사 결정을 대신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. **완전 후견인**은 피후견대상자를 위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. **한정 후견인**은 피후견대상자를 위해 법원이 허락하는 결정만 할 수 있습니다.

»» **어떠한 경우에 재산후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까?**

재산후견인은 피후견대상자가 특정 이유 및 다음 사항 때문에 자신의 재산 및 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을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:

- 1) 적절한 관리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재산이 낭비 또는 소모될 경우; 또는
- 2) 성인 대상자 및 그의 부양가족을 위한 지원, 관리 및 복지를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 경우.

나이 또는 신체 제약을 이유로, 정신적 능력이 있는 성인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재산후견인 임명을 법원에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피후견대상자가 자신의 재산 및 재정을 관리할 수 없는 일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:

- 1) 정신 질환 또는 박약;
- 2) 신체 질환 또는 장애;
- 3) 만성적인 알코올/기타 중독물 사용;
- 4) 감금;
- 5) 외국 정부에 의한 구금; 또는
- 6) 실종.

»» **자신의 재산 또는 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재산후견인이 필요합니까?**

재산 결정에 대해 이미 법적 권한(예를 들면 위임장)이 지정되어 있으며 결정에 문제가 없는 경우 재산후견인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»» **재산후견인 절차는 어떻게 시작합니까?**

피후견대상자의 복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재산후견인 임명 신청(양식 PC 639)을 작성하여 상속법원에 접수 수수료를 내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.

»» **변호사가 필요합니까?**

필요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특히 재산후견인의 임명에 대해 누군가 반대하는 경우 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»» **재산후견인에 대한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중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?**

후견인요청에 대한 특정 의견 충돌은 모든 당사자들이 중재를 받는 데 동의하거나, 당사자들이 중재를 받도록 판사가 명령할 경우, 법원 외부에서 중재될 수 있습니다. 법원에서 중재 서비스가 가능한지는 법원 서기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.

»» **법원에서 신청 접수를 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?**

접수한 신청이 수락되면, 피후견대상자에게 변호사가 있는 경우 또는 정신적으로 능력이 있는 성인이 임명을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**법정 후견인**을 임명하여 법원 절차에서 피후견대상자를 대리합니다.

귀하가 이 법정 후견인과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법정 후견인은 피후견대상자를 위해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. 법정 후견인 비용을 피후견대상자가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
필요한 경우, 피후견대상자가 의사나 정신 건강 전문가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. 법원에서 누군가(방문자라고 부름)를 보내어 대상자를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. 이 방문자는 법정 후견인 또는 법원 직원일 수 있습니다.

»» **응급 시 재산후견인이 즉시 임명될 수 있습니까?**

재산후견인을 임명하기 전에 대상자의 재산에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, 법원은 예비 보호 명령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. 이 명령에 특별 재산후견인 임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이 명령은 대상자 재산의 즉각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특별 조치들을 허락합니다.